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주호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500

발의연월일: 2024. 7. 8.

발 의 자:주호영·김승수·구자근

최은석 • 이인선 • 우재준

조지연 • 이달희 • 권영진

김위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및 중국 경제 성장의 둔화 등으로 내수 경기침체의 우려가 커지고 도산사건이 갈수록 고도화 · 다양화되면서 경제적 위기에 놓인 기업과 개인의 채무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.

이와 관련하여 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은 도산사건 처리만 담당하므로 법관의 전문성이 확보되고 보다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 서 대구에도 회생법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대구고등법원 소재지인 대구광역시에 회생법원이 설치될 경우, 대구고등법원 관할구역인 경상북도에 주된 사무소 등을 둔 법인 및 거주하는 개인의 경우에도 대구회생법원에 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경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관할을 둠으로써 대구회생법원 설치에 따 른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조 제12항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499호)의 의결을 전 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 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인 경우에 회생사건, 간이회생사건,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대구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판관할에 관한 적용례) 제3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신청한 회생사건, 간이회생사건,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 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वि	행		개 정 안
제3조(재판관할)	1 ~	① (생	제3조(재판관할) ① ~ ⑪ (현행
략)			과 같음)
<u><신 설></u>			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
			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경
			상북도인 경우에 회생사건, 간
			이회생사건, 파산사건 또는 개
			인회생사건은 대구회생법원에
			도 신청할 수 있다.